

대전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10260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삼환건설산업 주식회사

2. A

3. B

변론 종결2013. 9. 11. (피고 1, 2에 대하여)

2013. 12. 18. (피고 3에 대하여)

판결 선고2014. 1. 1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725,189원 및 그 중 148,050,234원에 대하여 2012. 9. 24.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 날부터 2013. 7. 2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 1) 원고는 2005. 8. 1. 피고 삼한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원금 153,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5. 8. 1.부터 2007. 8. 1.(이후 2012. 7. 27.로 변경)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장차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가 그 원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 2) 피고 A,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3) 피고 회사는 2005. 8.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소관: 원동지점,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금으로 18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나. 구상금 등 채권의 발생

- 1) 피고 회사가 2012. 6. 29.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12. 9. 24.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은행에 148,050,234원(= 원금 144,000,000원 + 이자 4,050,234원)을 변제하였다.
- 2)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체당금으로 1,215,025원이 발생하였고, 추가보증료 459,930원이 발생하였다.
- 3)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2. 9. 24.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4%,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725,189원(= 대위변제금 148,050,234원 + 체당금 1,215,025원 + 추가보증료 459,9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48,050,234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2. 9. 24.부터 2012. 11. 30.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4%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27.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홍진영

판사조형목